

환경관리 질의응답 Q & A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인계서 작성대상 질의

- Q** 저는 현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환경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08년 8월 4일부터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되었는데요 건설현장에서 당사로 반입되는 폐콘크리트라든지 폐아스콘 같은 성상은 전자인계서 자율사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로 반입되는 혼합건설 폐기물 같은경우는 일부는 선별이 되어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당사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로 반출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건설현장에서 반입되는 혼합건설 폐기물도 전자인계서사용이 자율적인지 의무화에 포함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당사가 순환골재생산을 하는 중간처리업체이니 당사로 반입되는 모든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또는 전자인계서 자율사용이 가능한지요?

- A**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득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 등의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등)은 같은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별지 제9호 서식, 4매)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대상은 아니며, 다만, 종이인계서를 작성하는 대신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도 됨) 그 외의 재활용(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간이인계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4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법률 제8613호, '07. 8. 3 공포) 개정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2008년 8월 4일부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대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관련

- Q** 저희 공장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으로 대기, 수질 배출시설은 없습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는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의 경우 1일 100kg 이상, 그 외 1일 300kg 이상이면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 공장은 공작기계, 압축기 등 소음배출시설이 있으나, 국가산업단지 내로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면제) 사업장으로 1일 150kg 정도 발생합니다. 이 때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가 필요없으므로 1일 300kg 미만이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소음배출시설이 있으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 A** 「소음·진동 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방지시설 설치 면제와 관계없이 폐기물을 1일 100킬로그램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대상여부 (보조버너 교체시)

- Q** 당사는 소각로를 운영 중에 있으며 보조버너 (120만Kcal/kg)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최근 버너 노후화에 따라 이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만약 기존과 동일한 연료에 동일한 용량인 120만 kcal/kg의 버너로 교체만 한다면, (참고 : 버너를 교체하더라도 체류시간(2초) 및 승온후 유지온도(850도)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습니다)
1)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인지요.

2) 버너 교체 후 시운전이 필요할 텐데 이때 – 당사는 TMS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 굴뚝자동측정기기 개선계획 보고 대상인지요.

- A** (1) 질의내용과 같이 허가당시와 같은 동일용량의 보조버너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동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배출시설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며,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의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

폐수배출시설변경사항 여부

- Q**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의 업태와 종목이 추가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가 변경이 될시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 하여야 하는지요?

- A** 질의 내용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측정기기 부착 관련

- Q**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측정기기 부착 유예가 언제부터인지를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당 사업장은 3종사업장으로 아직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아 운영치 않고 있으나 조만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별표 7] 7. 나항에 의하면 “3종사업장이나 시설용량이 일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7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동방지 시설로서 이 영 시행 당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사업장은 2010년 10월 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이 영 시행 이후 설

치하는 경우에는 2008년 10월 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까지 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방지시설의 설치 신고는 2006년 11월 14일 득하고 가동개시신고는 하지 않고 있어 이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A** 질의 내용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 영 시행 당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 중인 사업장이 아니므로 이 영 시행 이후 설치(설치허가를 받았으나 가동하지 않으므로)하는 것으로 보아 2008년 10월 1일 이후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질)배출시설운영일지 작성의 건

- Q** 당사의 제조사설이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해당되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를 득하였으며, 폐수 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에 해당되어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배출시설운영일지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시 적법처리시스템에서 인계서 및 관리대장-발생량, 위탁 처리량, 처리업체 및 방법-이 생성됩니다.

- A** 질의 내용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